

■ 행복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

■ 기관 기본정보

기관명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시설장)	차미혜
설치일자	2019.07.01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소재지	전북 군산시 미원로32 상가동 208호		
전화	063-466-5111	팩스	063-466-5121
이용대상	만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1~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홍보, 생활정보지,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기관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 ②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③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 통보만으로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분류)

급여 분류	서비스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 몸단장 5) 옷갈아 입히기 6)목욕도움 7) 식사도움 8)체위변 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 유지증진 11) 화장실이용 하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1) 인지자극활동 2) 일상생활 함께하기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통보한 “표준(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한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022.1.1. 수가(1회당)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등급별 월한도액 인상율	2021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제공자의 배상책임**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 ② **제공자의 면책범위** : 다음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6.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 ③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하여 한화손해보험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